

주요 변경 고시 내용 요약

■ 개정 배경

원산지표시 제도를 조기 정착시키고 실효성을 높이며 합리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고, 품목확대와 업무처리를 보다 간소화하기 위한 각종 서식의 통폐합 필요성 및 해양수산부 신설로 관장 품목과 기관 명칭의 변경 요건이 발생

■ 주요 개정내용

주요 내용	현행	개정	비고
1. 대상품목 확대	○ 국산농산물 127품목 ○ 농산가공품 51품목	○ 143품목 (추가품목 : 강남콩, 동부, 완두, 우엉, 포도, 느타리, 목이, 석이, 운지버섯, 고비, 두릅, 죽순, 우족, 쇠꼬리, 돈족, 쇠곱창, 건조누에) ○ 81품목 (추가품목 : 한과류, 발효가공, 농축, 버터유류, 채종유, 인삼음료 등)	○ 추가품목 - 97.6.30까지 계도기간
2. 농산가공품 원산지 표시 활자크기	○ 7.5" 이상, 단 포장표면적이 150cm ² 이하는 최소 7.5" 미만	○ 12" 이상, 단 포장표면적이 50cm ² 미만은 최소 8" 이상	○ 활자크기
3. 시료검정기관	○ 농산물 : 농검시험소	○ 농검시험소 및 일부 농검지소포함	
4. 과태료부과 관련 가. 부과기준 나. 부과대상	○ 가락 도매시장 가격 ○ 명시기준 없음	○ 인근 법정도매시장 가격 ○ 동일건에 대해 관련유통 종사자에 대한 부과근거 마련	
다. 의견진술 안내고지	○ 명시 기준 없음	○ 확인서 징구시 현장에서 의견진술 안내서 발부	
라. 영세가공 업체과태료 부담경감	○ 최소단위 : 25만원	○ 최소단위 : 15만원	
5. 서식간소화	○ 검사일지, 확인서, 시료채취 확인서	○ 종류란 삭제, 통폐합	
6. 계도기간 설정권한	○ 유통관리전담기관장	○ 농림부	